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지급금액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3,940개소) 사회보험 3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5인미만 사업장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정위 신고

온라인 신고 www.ftc.go.kr →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 신고

서면 신고 원사업자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



분쟁조정 신청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등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 (1588-1490, www.kofair.or.kr)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협의회 (02-2124-3232, www.kbiz.or.kr)

건설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02-549-20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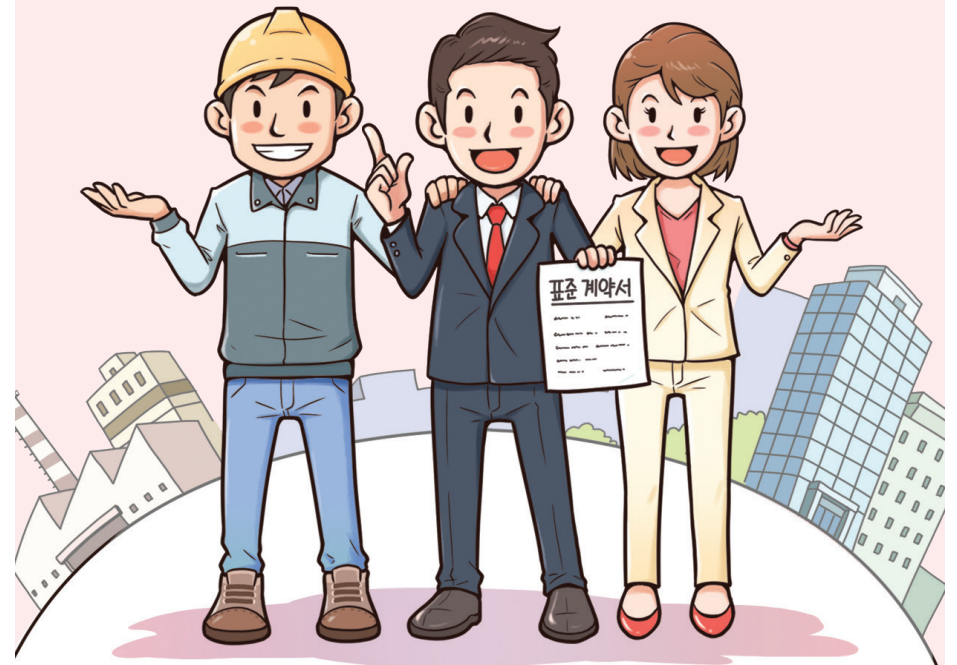


최저임금 상승? 이렇게 대처하세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민 중인
중소기업에게 드리는 핵심 Q&A 4



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01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하도급업체들의 애로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하면 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되어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반드시 증액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하는 대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7점 (중견기업 8점)을 받을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표준하도급계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02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기피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도급법(§16)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최저임금 상승 등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그 비율만큼 반드시 하도급 금액도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03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공급원가가 증가되었지만,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도급금액이 증액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을 올려준 실적이 많은 경우 대기업은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해달라는 하도급업체의 요청을 많이 수용해 줄 것입니다.
2017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해 그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로 나타났습니다.



04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 이외에 하도급업체들은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애로가 많습니다.

- 하도급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 문제인데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십시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지급금액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3,940개소) 사회보험 3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5인미만 사업장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 신고

서면 신고	가맹본부 소재지	관할 지방사무소	연락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울사무소	02-2110-6163
	부산, 울산, 경남	부산사무소	051-460-1025
	대구, 경북	대구사무소	053-230-6324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전사무소	042-481-8008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사무소	062-975-6822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

온라인 신고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 민원참여 → 하도급·유동·가맹 익명제보센터

※ 제보자의 IP정보 등 신원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이렇게 대처하세요!

가맹점의 운영비용 증가가 걱정되시는
가맹점주가 알아두면 좋은 Tip!



가맹



01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가맹점주는 가맹금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가맹본부와 나눌 수 있습니다.

언제 요청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협의를 안되면 어찌죠?

가맹금 조정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공정거래조정원이 도와드립니다.

*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가맹금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

가맹점단체를 통해서도 가맹금 조정 요청이 가능해요!

가맹본부가 표준계약서 사용을 거부하면 어찌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맹거래법 §14조의2)

*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신청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신청 fairnet.kofair.net

※그 밖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월~금요일, 09:00~19:00)



03

가맹본부도 가맹점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해요!

가맹점이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점주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청으로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비용의 40%(점포 이전이나 확장까지 수반하는 경우), 20%(이전이나 확장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변경)는 반드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합니다.(가맹거래법 §12조의2)

* 이에 위반되는 행위나 광고·판촉비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04

가맹점주의 고충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예:세제, 쓰레기통)까지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공정위로 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가맹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되고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가 용이해져 비용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점의 운영비용 증가가 걱정되시는가맹점주가 알아두면 좋은 Tip!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

-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지급금액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일괄 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방문·우편·팩스(3,940개소) 사회보험 3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5인미만 사업장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 신고

서면 신고	유통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사무소	연락처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서울사무소	02-2110-6118
	부산, 울산, 경남	부산사무소	051-460-1025
	대구, 경북	대구사무소	053-230-6324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전사무소	042-481-8008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광주사무소	062-975-6822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

온라인 신고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 → 민원참여 → 하도급·유통·가맹 익명제보센터

※ 제보자의 IP정보 등 신원정보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최저임금 상승?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가 알아두면 좋은 Tip!



유통



공정거래위원회

01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납품업체는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하세요!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면 납품가격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습니다.

언제 요청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의 공급원가가 증가** 하는 경우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협의를 안 해주면 어찌죠?

표준계약서에 따라 납품가격 조정 요청을 받은 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하고 30일이 지나도 협의를 제대로 안되면 공정거래 조정원이 도와드립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납품가격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신청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 신청 fairnet.kofair.net

※ 그 밖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월~금요일, 09:00 ~ 19:00)

02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통업체와 비용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판촉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소 50%**는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대규모유통업법 §11조)

대형유통업체가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의 매장을 옮기도록 한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전체 계약기간 중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의 비율만큼)를 보상해야 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16조)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03

여러분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사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분담**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납품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인행사 기간 중에는 유통업체가 판매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등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기간(10월) 중 백화점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 경감액 : 224억원(평균 4.02%p 할인)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거나 계약 기간 중 수수료율을 올려 부담을 주는 '갑질 행태'도 엄정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가 알아두면 좋은 Tip!